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25권 제2호, 2018, pp.31~55.

돌봄불이익과 기본소득

윤 자 영*

요 약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과 성불평등은 서로를 강화한다. 성불평등의 기저에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와 대우가 자리하고 있다. 돌봄은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사회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보통 약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가 수행하는 돌봄은 그 수행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보상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그 결과 낮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더욱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력 관계에 놓여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지속시킨다. 기본소득 제도는 성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돌봄 노동의 특수한 성격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 제도가 여성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천착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본소득 지지론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점을 검토하고,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돌봄불이익이 완화 혹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돌봄 노동 선택의 성별화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어: 기본소득, 돌봄노동, 성별분업, 돌봄불이익, 성불평등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www.kci.go.kr

1. 들어가며

기본소득 제도는 후기 산업사회의 신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의 한계를 보여준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는 기본 소득을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교부되는 주기적 현금'이라고 정의한다. 기본 소득의 목표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자격을 갖춘 개인이 삶을 자유 의지대로 설계하고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치러야 하는 막대한 자격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업, 질병, 장애라는 신사회적 위험을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Handler & Babcock, 2006; 강남훈, 2013a).

돌봄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기본소득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청년실업, 불안정 노동과 빈곤, 전반적인 삶의 질 하락과 미래 전망에 대한 부재로 시름시름 앓고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들의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충분한 시간과 경제적 자원을 보장하지 못한다. 실업자와 불안정 노동자들 역시 안정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공동체를 꾸릴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여 돌봄을 회피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일자리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모두 건강한 삶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돌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돌봄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회적 차원의 대응은 돌봄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돌봄을 공적으로 조직할 필요성은 후기 산업사회가 초래한 돌봄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정당화되었다. 국가는 가정에서 여성들이 무급으로 가족 구성원에서 제공하던 돌봄을 사회화했다. 돌봄 시간의 상당 부분이 가정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동했지만, 돌봄의 공적 조직 방식이 민주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이다. 특히 돌봄이 가정에서 공적 영역으로 일정 부분 이동하고 난 이후에도 돌봄을 수행하는 자들의 경제적 지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돌봄을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그 활동을 수행하는 자들, 주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불이익은 여전하다.

돌봄과 성불평등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성불평등의 기저에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와 대우가 자리하고 있다. 돌봄은 성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사회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약자의 위치를 점하게 되고, 사회경제적 약자가 수행하는 돌봄은 그 수행에 대

www.kci.go.kr

한 공정한 대우와 보상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낮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더욱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력을 등에 업고 불평등한 성별 관계에 지속적으로 편입된다.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과 성불평등은 서로를 강화한다. 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하는 돌봄의 본질적, 문화적, 제도적 특성이 재생산되는 한, 돌봄불이익과 성불평등이 서로를 강화하는 순환 구조가 붕괴되기란 어렵다. 돌봄불이익과 성불평등의 순환이 지속되는 한, 돌봄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기본소득 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젠더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연구들은 기본 소득제도가 여성의 경제적 삶,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성역할, 가부장적 결혼 관계에서 여성에게 실질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기본소득 제도는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된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위험인 빈곤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보장 제도이다.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는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노동시장 유연화로 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면서 비전형적 고용관계의 노동자가 양산되었다.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는 낮은 임금과 빈번한 고용단절을 특징으로 하며 근로빈곤층을 대량 양산하였다. 노동과정과 기술 변화로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이다. 여성, 노인, 청년 등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집단이 불안정 노동자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제조업과 유통업에 동원되었던 여성은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여성 노동자 가운데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 비중은 남성에 비해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준적 고용관계에 기반을 둔 사회보장제도는 비전형적 고용관계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를 확대시킨다. 기본소득 제도는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노동자의 대표 집단인 여성에게 경제적 안정과 빈곤 감소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김교성 외, 2018: 76-83).

둘째, 기본소득 제도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고 성별분업을 해체할 수 있는데 기여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저임금 비정규 노동의 대부분은 여성이 수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자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의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돌봄노동을 생산적이고 가치로운 활동으로 인정하여 돌봄을 제공하고 싶은 남성과 여성은 그러한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여성만이 주로 돌봄노동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여성주의자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성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어야 한다(윤자영, 2016; 권정임, 2013).

셋째, 시간제나 불안정한 노동자로서 남성 배우자의 소득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성

www.kci.go.kr

에게 기본 소득 제도는 경제적 독립의 조건을 부여하여 억압적 결혼 관계에서 탈피를 가능하게 한다. 박이은실(2013, 2014)은 성별분업과 돌봄 노동을 둘러싼 논의가 암묵적으로 이성애적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의 돌봄노동과 남성의 소득의 거래에 초점을 두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기본소득을 통해 여성이 남성에의 성적 종속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비혼 1인 가구의 경제적 자립이나 평등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대안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기본소득 제도가 여성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제도가 젠더 정의와 '불편한' 관계일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는 여성에게 돌봄의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성불평등을 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주의는 젠더 정의의 이상적 모델로 남녀가 유급노동과 돌봄 노동을 공유하는 '보편적 돌봄수행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을 지향한다(Fraser, 1997). 기본소득이 젠더 정의에 기여할 것인지 저해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은 보편적 돌봄수행자 모델로 이동하기 위해 시장노동과 돌봄노동 가운데 어떠한 활동을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강조할 것인가에서 비롯되고 있다. 기본소득이 시장 노동 참여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면 노동시장에서의 기회와 결과라는 성평등 전략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은 여성에게 시장노동을 우선시한다. 기본소득은 여성의 가정 내 무급 돌봄에 대한 보상적 현금 지원으로 작용하여 돌봄에 대한 사회문화적 책임이 부여된 여성들만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결과적으로 여성 중심의 '돌봄수행자 모델(caregiver model)'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시장노동 참여 동기를 약화시켜 그동안 성취해 온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라는 역사적 진보를 되돌려놓으며 남녀 성별분업을 공고히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여성을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한 스웨덴식의 복지 국가 전망의 핵심축인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Bergmann, 2004). 반면 기본소득이 오늘날 젠더 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universal breadwinner model)'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은 우리 사회가 시장노동에서 돌봄노동으로 무게중심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커리어 편향적인 삶의 방식을 남녀 모두에게 규범화하는 전략은 남녀가 돌봄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시장화하거나 회피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여성주의의 유보적 태도는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과 성불평등의 고리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윤자영, 2016).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별분업은 변형된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가정과 시장 영역에서 돌봄노동의 상당 부분을 여성에게 책임지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불안정 장시간 노동에 돌봄 책임까지 떠안으며 고통을

www.kci.go.kr

겪고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대신 돌봄노동을 선택하게 만들 수도 있다. 돌봄노동이 유급 노동과 동등한 대우와 결과를 초래한다면 여성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사이에서 돌봄노동을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성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돌봄 수행에 불이익이 존재하는 한, 여성의 돌봄노동 선택은 필연적으로 성평등을 저해한다. 윤자영(2016)은 돌봄노동 수행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완화하거나 해소하지 않고서는 남성에게 돌봄의 책임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고 성별분업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본소득 제도 도입과 함께 돌봄 노동 수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글은 기본소득 제도가 성불평등을 완화하고 여성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지만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의 원천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 도입 지지자들은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가운데 하나로서 돌봄노동을 언급하고 있지만, 돌봄노동과 성불평등의 뿌리깊은 상호작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이 야기하는 돌봄불이익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기본소득 제도가 성평등을 동반하는 사회 변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천착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2. 기본소득 논의와 돌봄 노동

1) 기본소득과 여성주의 노동 패러다임

기본소득 제도는 인간의 실질적 자유를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 가운데 유급 노동에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기본소득 제도가 바라보는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이 노동시장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서, 또는 타인의 임금소득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보장되는 사회이다(Van Parijis, 1995). 기본 소득은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불함으로써 '생산'적인 행위를 시장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사회권과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현대 복지국가 제도의 이념적 패러다임을 지양한다.

이러한 이념적 지향은 전통적인 유급/무급 노동의 이원적 구분이 여성 억압의 물질적 기초가 되고 있다는 여성주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 기본소득 제도는 남성 전일제 임금노동자를 완전한 '시민'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전제하는 기존 복지국가 제도에 근본적으로 도전한다(Zelleke, 2008). 여성주의

www.kci.go.kr

는 인간의 경제적 삶을 이해하는 데 화폐와 시장 경제에 배타적 특권을 부여하는 기존의 관점과 대립해왔다. 전통적인 주류 학문의 '경제'와 '노동' 개념은 돌봄 노동을 배제했다. 돌봄 노동이 배제된 경제적 이론과 실천은 여성의 열악한 경제적 삶의 원인과 개선의 요구를 온전히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패해왔다. 예를 들어 여성노인 빈곤의 주된 이유는 생애에 걸친 불안정노동과 돌봄 수행이지만, 현대 복지국가는 돌봄 수행을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한다. 돌봄노동을 '노동'의 한 형태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지지자와 여성주의는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 제도가 노동의 한 형태로 끌어안고 있는 돌봄 노동을 유급노동과 동일한 이론적 지위를 갖는 '노동'으로 위치시키기 위해 여성주의는 노력해왔다(윤자영, 2012).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이 1960-1970년대에 치열하게 전개한 가사노동 논쟁은 가사노동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관계와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관계에서 여성의 종속적 지위에 대한 물질적 기원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비판한 마르크스가 가사노동을 비생산적인 것으로 이론화했다고 비판했다. 마르크스는 가사노동이 상품 생산 과정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적인 노동이 아니며, 자본 축적에서 가사노동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가사노동 논쟁에 참여한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은 마르크스가 가사노동이 자본 축적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가족은 노동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는 사회제도이다. 가족 안에서 주로 여성이 수행하는 무급 가사노동은 노동자의 식사, 위생, 주거 등 일상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자본가는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하는 노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본가가 절감한 비용만큼 가사노동은 이윤 창출과 자본 축적에 기여한다.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은 가사노동을 '생산'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마르크스 전통을 따르는 관점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급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생산적인 역할과 기여를 부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Gardiner, 1997:82-83).

여성주의자들은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 이론도 돌봄 노동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전통적인 노동경제학은 개인의 시간 배분은 여가와 시장노동 간에 이루어진다고 모형화한다. 시장노동은 '생산'에 기여하는 노동 형태이며 그 노동을 하는 개인은 비효용, 즉 불쾌함이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소득을 받는다. 개인은 소득으로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이며 생산자는 아니다. 1960년대 이후의 신가정경제학은 종래의 경제학이 무시했던 가사 및 돌봄 노동이 가계 생산의 투입 요소이며 여가와 구분된다고 인정했다(Becker, 1965). 그러나 자녀를 위한 돌봄 노동은 부모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부모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소비활동일 뿐이며, 시장노동이 국

www.kci.go.kr

민소득에 기여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생산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데 시간을 쓰는 행위가 고급 취향의 소비재를 구매하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이다(Folbre, 1994).

기본소득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해 오던 무급 돌봄 노동이 시장 노동과 다름없이 가치있고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인식을 대중적 논쟁과 사회정책 영역에서 부각시키는 기여를 했다. 현대 복지국가는 유급노동 참여와 그에 기반한 기여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의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돌봄을 조직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권리를 제도화했다. 기본소득 논쟁은 무급 돌봄 노동 수행을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돌봄수행자 모델'을 지향하는 여성주의 노동 패러다임과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

2) 기본소득 지지론자들의 돌봄노동에 대한 관점

기본소득 제도 지지자들은 대부분 실질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가운데 하나로서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언급한다. 기본소득 제도는 유급노동뿐만 아니라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생산적 활동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 확대된 선택지를 통해 실질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벤토스(2016:109-121)는 우리 사회가 유급노동만이 아니라 자원봉사나 가사노동과 같이 다른 형태의 노동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관련된 행위만을 일컫는 용어였지만 노동은 '그 행위에 보수가 있든 없든 간에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에게 '노동'과 '노동 아닌 것'의 분류는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 듯하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중요한 세가지 노동은 유급노동, 가사노동, 자원봉사이다. 유별나게 힘들지 않아도 자기목적적, 즉 노동의 행위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질 때 노동으로 정의할 뿐이다. 자원봉사는 자기목적적이라는 점에서 노동이다. 개인적인 흥미나 목적에 의한 행위도 노동일 수 있는데, 타인을 위한 무형의 서비스를 무보수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노동의 정의에 사회적 효용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한다. 기본소득은 이 세 가지 유형의 노동을 통한 실질적 자유를 누릴 권리를 지지한다. 기본소득 제도는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 강화, 잠재적 노동자에 대한 고용 보조금, 나쁜 일자리의 자연 도태를 통해 유급노동에 대한 권리도 지지한다.

www.kci.go.kr

김교성 외(2018:112-113)는 "노동 없는 미래의 모습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미래가 아니라 사람이 자유의지로 착취에 기반한 임금노동에서 벗어나서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의미한다고 본다. 돌봄노동은 개인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다중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기본소득 제도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선택해야 하는 산업사회의 노동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의 탈노동 사회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생존적 노동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다중활동을 공존하는 사회가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미래이다.

오준호(2017:123-124)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을 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의미 있는 일을 존중하고, 무보수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사람들은 보수에 얽매이지 않고 집안일, 아이 키우기, 아픈 이웃 돌보기, 텃밭 가꾸기, 예술 작품 만들기, 자원봉사, 정치 참여 등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자유롭게 수행할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역시 기본소득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함을 강조하면서, 기본소득을 받고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개인의 선택은 한 사회의 제도와 문화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아래에서 소개할 Van Parijs and Vanderborght(2017:185-189)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본소득 지지론자들은 돌볼 수 있는 선택을 강조하지만 특정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돌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남성이 아닌 여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남성에게 돌볼 '책임'을 어떻게 여성과 함께 나누도록 만들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다. 라벤토스(2016:125-126)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가정 내 남녀의 가사 분담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가정 내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기본소득만으로 노동에서의 성차별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이 해결한다고 한 적도 없고, 해결하고자 했던 주제도 아닌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관성 없이 기본소득에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차별과 성적 분업은 뿌리 깊은 사회적 문제이며,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사회적 개혁으로서만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남녀 가사분담에서 조금 더 여성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진정한 가사의 평등한 분배로 나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기본소득 외에도 '추가적인' 사회적 문화적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지만 어떠한 사회문화적 변혁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답은 회피한다.

여성주의적 기본소득 지지 입장도 돌봄에 대한 선택권은 돌볼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돌봄을 안 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의미한다. 박이은실(2013, 2014)은 기본소득이 남성을 보편적 인간으로 상정하고 여성은 그에 성적으로 종속된 현재의 성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급진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www.kci.go.kr

고 주장한다. 이 급진적 가능성은 결국 유급 노동과 돌봄 노동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결혼 관계에서의 노동의 거래, 즉 남성의 시장노동과 돌봄노동의 거래 관계에서 돌봄노동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여성이 남녀 권력관계 속에서 돌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데 방점을 두며 돌봄의 사회적 재구성을 위한 기본소득 도입 전략에는 관심을 덜 기울인다.

권정임(2013)은 기본소득이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임금을 남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본이 노동자계급을 수탈하던 자본주의 지배에 대한 거부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은 생계부양자인 남성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그 가족의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 이때 다음 세대 노동자의 출산과 양육을 포함한 노동력의 생산과 재생산을 위한 여성의 노동력을 아무런 대가없이 합법적으로 '수탈'해간다. 이런 맥락에서 현존하는 젠더 부정의는 젠더 갈등만이 아니라, 자본의 지배전략과 계급·계층 간의 모순이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가사노동 형태를 통한 여성노동력의 수탈은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의 중요한 기초의 하나이기 때문에, 젠더 정의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강조해 무급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자본이 여성 노동력을 더욱 수탈하는 것을 정당화되고 강화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젠더 정의에 복무할 수 있으려면, 생산수단의 공유에 기초하는 자본지배의 철폐와 더불어 가사노동을 최대한 사회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급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가사노동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성차별적 노동분업의 해체를 촉진하고 돌봄의 사회화와 좋은 일자리를 통해 여성이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가사노동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Van Parijs and Vanderborght(2017:185-189)는 여성들이 주류 노동운동 집단보다 기본 소득을 지지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소득이나 삶의 선택지에서 남성보다 더 큰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도가 낮고 평균 시간당 임금은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 소득은 여성에게 금전적으로 더 큰 이득일 수밖에 없다. 기본 소득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과 노동을 그만둘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시간제 노동과 경력 단절을 야기하는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부의 소득세 실험에서 드러났듯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혼 여성은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즉 '원하지 않는' 유급노동과 돌봄 노동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특정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돌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남성이 아닌 여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주의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둘러싸고 기본 소득 도입 찬성에 주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여

www.kci.go.kr

시장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그것은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은 시장 노동 영역에 남아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장기적인 물질적 안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근시안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인한 이러한 여성의 선택이 실질적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여성주의는 낸시 프레이저가 비판했던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여성들에게 그러한 선택지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돌봄 중심'이 아닌 '커리어 중심'의 편향을 강화하지 말고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 소득이 커리어 중심 편향을 완화할 수 있다면 넓어진 선택지의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여성 비중은 남성의 그것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조건은 기본소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기회를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활용한다면 간접적으로 여성의 진정한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이에 도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음 두 가지 기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서의 남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성은 시장 노동 영역에서 역할 모델이 없을 때 커리어 선택을 포기해버릴 수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전일제로 일하지 않는 경향이 일반화되면 이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통계적 차별로 인해 여성에게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만약 기본 소득 도입으로 이러한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개인 단위의 소득세와 관대한 아빠 육아휴직 급여를 도입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전자는 부부 단위로 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차소득자의 근로소득 증가가 한계세율을 증가시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인센티브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후자는 커리어 편향적인 남성들에게 관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여 돌봄에 참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이다. 이러한 조치는 남성과 여성이 평균적으로 동일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기제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동시간의 감소는 자유의 감소와 자유의 확대 모두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이 둘은 명백히 구분된다. 남녀의 유급노동과 돌봄노동 시간을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성적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선택을 유도하지 않을 조치를 취하기만 한다면 기본소득 도입의 결과 설사 여성의 노동시간이 남성의 노동시간보다 더 짧아졌다 해도 그것은 자유의 확대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기본소득 제도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여성이 수행하던 무급 노동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보상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던럽(2016)은 기본소득이 여성의 무급 노동에 대한 보상, 즉 여성들이 하는 집안일 등은 공식적인 경제가 그 덕을 보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영역 밖의 일로 배제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본소득 제도가 그런 여성들에게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Baker(2008)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기본소득은 가치로운 일에 대해 조건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payment)'일 수 없다. 기본소득은 돌봄노동에 대해 다

www.kci.go.kr

른 종류의 활동에 보내는 것과 동일한 보편적 지지(universal support)를 제공할 뿐이다. 기본소득이 무급 노동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남성이 과연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선택지로 유급노동 대신 돌봄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기본소득 도입 이후에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돌봄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젠더 정의를 위한 기본소득 도입의 제도적 조건 마련을 위한 기존 논의가 여성이 돌봄 노동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남성이 돌봄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노동 선택이 실질적 자유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돌봄불이익

기본소득 제도 지지론자들은 기본소득 제도가 여성에게 선택지를 넓혀 돌봄 노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추구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을 받게 된 여성이 돌봄노동을 선택할 때 그러한 선택이 성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남성에게 동일한 선택지가 제공되었을 때 돌봄노동을 선택할 것인가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달려 있다. 만일 기본소득이 도입되었을 때 여전히 여성만이 돌봄노동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돌봄불이익 때문이다. 돌봄불이익을 해소하지 않고는 돌봄 '책임'을 지울 수 없고, 돌보는 행위를 통해 실질적 자유를 행사하기란 어렵다. 본 절에서는 돌봄노동 수행에 수반되는 돌봄불이익은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함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시간은 돌봄 수행자의 평생소득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과 그러한 특성을 강화하고 있는 사회제도는 돌봄불이익을 심화시켰다.

1) 돌봄수행자의 경제적 손실

기본소득은 개인이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다중활동 사회에서 수행 가능한 다양한 활동 가운데 돌봄노동은 그 밖의 다른 활동과 경제적으로 다른 지위를 갖는다(윤자영, 2012). 돌봄 노동은 무급으로 수행하는 일반적인 가사노동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 존재한다. 가사노동 중에서도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를 가로막는 형태의 노동이다. 가사노동이 자본주의 확대재생산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 세

www.kci.go.kr

대의 노동력의 유지뿐만이 아니라 미래 노동력인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다. 상품화의 진전으로 성인 노동자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노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용이해졌다.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광범위해지고 다양화되어 가사노동을 시장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자동화와 대량 생산으로 가격도 저렴하다. 가정에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시장으로 이동하여 생산될 때 규모의 경제의 잇점을 누리게 된다. 가구 규모가 작아지면서 개별 가정의 무급 노동의 생산성은 과거에 비해 하락했다.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노동은 상대적으로 완벽하게 대체가능한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Molyneux, 1979).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노동은 무급 노동 시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성별 분업이 가장 뚜렷하게 존재하며 변화가 지체된 영역이다(Anttonen, 2005).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무급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무급 노동 시간 가운데 돌봄노동 시간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무급 노동 가운데 남을 돌보는 직접적인 대인서비스에 기초한 돌봄노동은 시장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로 대체가 어려움을 의미한다(Folbre and Yoon, 2008). 가족은 이제 무급의 가사노동이 수행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영역으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다.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시장이 제공하는 대체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요리, 청소, 세탁 등의 일반적인 무급 가사노동이 아니라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노동으로 인한 것이다. 램버트(2016:71-121)도 지적하듯이, 가정에서 하는 그림자 노동은 밥짓고 빨래하는 청소하는 전통적인 형태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녀를 통학시키는 일, 대학생 자녀의 학점과 학사 관리, 어떤 학원과 방과후 활동을 할지 계획하는 일 등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간헐적이고 전문화된 형태의 돌봄 노동은 대체서비스를 찾기가 어렵다.

대체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여성은 일정 시간을 돌봄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부모, 특히 엄마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 투입한 시간은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현재와 미래 소득의 상실을 초래한다. 노동시장 이탈은 현재의 금전의 손실을 넘어서서, 경력 단절 기간 동안의 숙련 마모로 인한 잠재 소득의 상실과 시장소득에 연동된 사회보장 소득의 상실을 아우른다. '빈곤의 여성화'는 여성의 돌봄 노동 수행으로 인한 빈곤에 다름 아니다. Dankmeyer(1996)는 네덜란드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을 비교했을 때, 대졸 엄마들은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대략 13% 정도의 평생 소득 손실을 경험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돌봄 책임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임금 손실을 경험한다. 김종숙·이택면(2011)에 따르면 5년 이상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한 여성은 19%의 임금 손실을 경험한다. 실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손실 폭이 커지며, 특히 대졸

www.kci.go.kr

이상 고학력 여성은 저학력 여성에 비해 임금 손실을 더 크게 경험한다.

다른 모든 관찰가능한 특성을 통제하고도 돌봄 노동을 수행한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남성보다 낮다. 돌봄 노동을 수행한 유자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현상을 지칭하는 가족임금격차(family wage gap)는 가족 책임으로 인한 임금불이익이 여성 간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Waldfogel, 1997; Waldfogel, 1998). 돌봄노동을 수행하지 않을 때 남녀 임금 격차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능력주의에 기반하여 능력있는 여성은 남성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이 경험하는 저임금의 주된 원인은 돌봄노동 수행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대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요리, 육아 등 일상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반드시 실행하여 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노동은 다른 종류의 가사노동보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이 증가했지만, 밥짓기와 자녀돌보기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은 여성이다. 남성은 가사노동 가운데서도 청소나 빨래, 식사 후 뒷정리, 쇼핑 등 나중으로 미루거나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종류별 성별화는 남녀가 시장 노동에서 종사하는 직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남성은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적 안배 없이 시장노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 가사노동을 하더라도 임금률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Hersch & Stratton, 1997; Bonke et al., 2005).

2)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과 돌봄불이익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은 돌봄불이익을 야기한다. 돌봄노동은 돌봄제공자와 수혜자의 대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돌봄노동은 타인의 역량(capabilities)을 고양시키기 위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이다. '역량'이란 건강, 기술, 감정 등을 일컬으며,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능력 등을 포함한다. 돌봄은 물질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이 결부된 노동이다. 돌봄노동은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거나 보호, 감독, 대기 등 대상자의 안전에 요구되는 활동도 포함한다.

첫째, 돌봄노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내재적 만족(intrinsic satisfaction)이어야 한다는 믿음은 돌봄불이익의 원천이다.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개인은 다양한 동기를 가질 수 있지만 유독 돌봄 노동자에게는 타인의 행복 추구라는 내재적 만족을 강조한다. 타인의 강제나 문화적 혹은 형사적 처벌의 두려움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고,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돌봄을 제공할 수도 있고, 내가 돌봐 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는 호혜에 대한 기대를 갖고 돌보기도 한다. 돌봄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로 여기는 사람들은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망을 갖기도 한다. 자신의 이

www.kci.go.kr

해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으로, 혹은 타인의 행복 추구만을 궁극적인 행위 수행의 목적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동기들은 상호 배타적이지도 않다. 돌봄은 도구적 과업수행과 애정적 관계를 아우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순수한 경제적 동기, 즉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돌봄노동도 노동 과정에서 애정, 존중, 상호 연대라는 관계가 성숙할 가능성이 높다. 역으로 순수하게 이타심으로 시작한 돌봄노동도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타심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동기의 조합에 따라 돌봄 수혜자가 받는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은 영향을 받는다(Folbre and Nelson, 2000).

돌봄노동자에게 대상자에 대한 사랑으로 돌봄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돈을 목적으로 두고 돌봄노동을 수행하면 돌봄의 질이 훼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돌봄 노동이 합리적 계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동기에 바탕을 두지 않고 주체 간의 연대와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강한 도덕적 의무 관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돌봄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노동'과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강력한 저항이 존재한다. 한 연구는 간호사의 임금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사랑의 동기를 갖고 간호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고, 낮은 임금을 수용하는 간호사가 높은 임금을 주장하는 간호사보다 훨씬 환자를 성심성의껏 돌볼 것이라고 주장한다(Heyes, 2005). 낮은 임금은 돌봄이라는 순수한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만이 내재적 동기에 기반해 노동을 하지는 않는다. 다른 직종의 노동도 내재적 만족을 주고, 어떤 일이 내재적 만족을 주는지 여부는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돌봄노동이 다른 직종과 다른 점은 돌봄노동자의 내재적 만족은 돌봄대상자인 타인의 행복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돌봄노동 제공자는 노동의 결과에 대한 보상과 함께 타인의 행복을 양립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직종의 노동과 달리 돌봄노동만이 심리적 보상을 주고 있다는 이중적 잣대는 돌봄노동자들이 받는 임금불이익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한다(Folbre & Nelson, 2000).

둘째, 돌봄노동 제공자와 수혜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돌봄 노동의 성과에 중요하다는 점은 돌봄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타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경제학자들은 '이타적 선호(altruistic preferences)'로 묘사한다. 돌봄노동의 동기가 되는 이타적 선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상관없이 작동되는 추상적 도덕 원칙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감정적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특수한 형태를 취한다. 돌봄노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숙련은 표준적이기 보다는 대상 특정적(person-specific)이다. 따라서 돌봄노동자와 수혜자의 장기적 관계는 돌봄노동의 산출물의 성과, 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돌봄 수혜자는

www.kci.go.kr

도구적 돌봄 행위의 완벽한 수행보다는 오랜 기간의 돌봄 관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는 역설적으로 돌봄노동자의 돌봄불이익을 강화한다. 돌봄 행위는 '변화 효과(transformative effect)' 즉 돌보는 일을 함으로써 더 자상하고 배려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돌봄노동자는 자신이 돌보는 사람과 감정적 유대와 애정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돌봄노동자는 금전적 보수 등 '합리적'이거나 '효율적' 목적에 의해 자유로이 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파기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가 된다. 이러한 애정과 유대감은 돌봄의 질을 위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돌봄 수행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와 애착 관계에 놓인 돌봄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파업, 즉 돌보지 않겠다는 위협을 하지 못하는 '사랑의 노예'가 된다(Folbre 2001).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도 '사랑의 노예'가 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해진다. 가족 안의 돌봄 책임의 성평등적인 재분배가 더디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엄마가 아빠보다 사랑의 노예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엄마는 아빠와 돌봄 책임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이 돌봄 파업을 하겠다는 협박을 아이 아빠에게 하기란 쉽지 않다. 아빠가 돌봄에 협조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를 방기하는 대신 직접적인 돌봄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 부양자 역할까지 떠맡기도 한다. 이러한 돌봄 책임이 여성을 '사랑의 노예'로 만든다는 사실은, 왜 여성이 시장노동참여를 통한 경제력을 갖고 있어도 가구 내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불이익을 떠안게 되는지를 설명한다(Pollak, 2005).

바바라 버그만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주의 경제학자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바로 돌봄노동의 감정적 유대와 여성 종속성 때문이다. 바바라 버그만은 육아휴직 보다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상품화만이 진정한 성평등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한다(Bergmann, 2008). 그녀는 Gornick and Meyers(2003)가 성평등을 위해 제안하는 일가정 양립정책, 즉 유아기 부모의 육아휴직, 보상 수준이 좋은 시간제 일자리,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가운데,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성평등에 부합하지만 부모가 좀 더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전자의 두 가지 정책은 성평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성의 '상품화'를 제고하는 것만이 성평등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Folbre(2008b)에 따르면 바바라 버그만이 여성은 돌봄 책임이라는 감옥에서 뛰쳐나와야 하고 돌봄이라는 선호를 표현하려는 성향에 대항해 싸워야 하며 남성과 똑같이 행동하고 느껴야 한다는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돌봄노동 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아동과의 정서적 유대로 인해 여성은 결과적으로 남성과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 선택을 하게

www.kci.go.kr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돌봄 노동의 산출물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시장과 가족에서의 돌봄노동에 대한 온전하고 공정한 보상이 어렵다. 돌봄노동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성과 평가가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England and Folbre(2003)은 신제도경제학의 '계약' 개념에 기대어 돌봄노동의 임금불이익을 설명한다. '계약'은 상호 간의 기대나 의무에 대해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맺은 이해나 합의를 일컫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구속력 있는 책임을 부여한다. 돌봄 노동을 둘러싼 계약은 다른 종류의 계약과 다르다. 돌봄 서비스를 계약할 경제적 자원이 없는 취약 계층에 속해 있는 아이, 노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들은 계약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시장화된 돌봄노동의 임금 불이익은 서비스의 질이 측정이 어렵다는 데 부분적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돌봄노동은 노동 과정의 감시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돌봄노동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계약을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어렵다. 돌봄노동 과정에 동원되는 기술과 지식은 돌봄대상자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용되고 구현되기 때문에 단일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평가 기준을 계량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돌봄을 직접 제공받는 아동이나 노인은 스스로 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인구 집단이다. 노동과정의 감시를 위해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겠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돌봄 제공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카메라를 설치해도 신체적 동작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은 감시가 가능하지만 애정과 관심, 돌봄대상자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등 심리정서적인 서비스의 결과물은 측정 불가능하다.

돌봄노동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돌봄노동자에게 '효율성 임금 (efficiency wage)'이 제공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England & Folbre, 2003). 전통적인 임금결정이론은 임금 수준이 근로자의 생산성에 상응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즉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일자리의 가치가 높아진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 근로자의 생산성이 높아져 사용주는 의도적으로 시장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수준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효율성 임금은 개별 노동자가 투입한 노력을 측정할 수 없지만 노동자당 평균 산출은 측정할 수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돌봄노동은 시간당 평균적으로 투입한 노력과 산출물을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용주는 효율성 임금을 지불할 동기가 없다. 사회서비스 표준단가나 수가는 돌봄서비스의 질에 근거하기 보다는 돌봄노동자의 유보임금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Ito Peng, 2010).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돌봄노동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려는 수단으로 임금이라는 보상을 사용하기보다는 근로자의 내재적 만족을 강조하는 것이다. 돌봄 계약의 특수성 때문에 나타나는 돌봄불이익과 돌봄서비스 질의 저하는 동전의 양면이다. 근로자의 내재적 동기가 질을 보장할 가능성은 높지만 근로자가 자신들

www.kci.go.kr

의 근로 환경에 대한 통제권이 없고 돌봄노동 수행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한 내재적 동기가 질로 반영되기는 힘들다. 돌봄노동을 하는 사람은 돌봄 수혜자와 정서적 공감을 하지만 고용주나 관리자는 돌봄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보다 비용 절감 전략을 택하기가 쉽다.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닌 소비자 역시, 특히 직접적인 돌봄 수혜자와 정서적 유대관계가 느슨할 때 저렴한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넷째, 자녀를 키우는 돌봄노동의 '공공재'적인 특성으로 인해 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불이익은 자본주의 발전과 현대 국가의 복지·재정체계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England and Folbre(2003)에 따르면 '공공재'의 특성을 지닌 돌봄 노동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수혜받는 사람의 양자 관계를 넘어서서 그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 외부성(social externality)을 발생시킨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외부성이란, 돌봄을 주고 받는 당사자 간에 발생한 비용과 혜택의 교환이 당사자들을 넘어서서, 돌봄의 혜택이 전체 사회경제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돌봄계약의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돌봄에 따른 사회적 혜택과 비용을 완벽하게 계측하고 교환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Folbre(1994)는 자녀는 '공공재 (public goods)'라고 주장한다. 부모, 주로 엄마가 자녀를 위해 행하는 돌봄노동은 돌봄을 제공하는 부모에게만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 국민경제의 여러 주체에 중대한 경제적 함의를 지닌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지적 능력을 배양시키거나 기술을 습득하게 할 수 없을 것이고, 고용주는 자본과 결합하여 생산에 투입할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부모의 돌봄노동은 부모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효용 증대만을 위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전체 국민 경제로 그 혜택이 공유된다.

Folbre(1994)에 따르면 가부장제는 여성에게 돌봄노동의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는 유교 이데올로기적 문화 전략과 사회조직 원리를 통해 돌봄 노동을 효과적으로 조직했었다. 전통 사회에서 자녀는 농경에 바로 투입되어 부모 세대와 생산수단을 공유하며 생계를 꾸려나간 뒤 부모가 나이 들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들을 봉양했다.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이는 비용은 부모가 모두 지출하지만 그 아이는 자라서 부모가 늙고 병들었을 때 물려받은 농경지를 일구어 봉양해줄 것이라 기대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데 돈이 들었지만 그만큼 되돌려받았다. 즉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했지만 혜택 또한 사적인 범위 안에서 머물렀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러한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변화했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의 기회 비용이 높아졌고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으로서 가족 경제를 계승하던 자녀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농경제 사회에서 자녀는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은 자녀에게 의식주 등 '투자'한 만큼 거두어 들일 수 있었던 반면, 아이가 임노동자화되는 산업사회에서는 개별 부모는 여

www.kci.go.kr

전히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의식주와 교육에 돈을 지출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실히 실현될 것인지 불투명해졌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식에게 투자해야 하는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으며 저성장 고실업 사회가 되면서 자식에게 부양받을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부모가 개인적으로 돈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 키운 자녀, 즉 미래의 노동력으로부터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노릇을 한 적이 없는 사람도 연금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여성의 돌봄 노동의 불이익은 개인적으로 떠안지만, 혜택은 누구나 공유하는 재정적 외부성(fiscal externality)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녀를 둔 남성은 임금노동에 종사하며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자녀를 노동력으로 키워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임금노동은 생산활동이자 경제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어 연금 등 사회보장 수혜의 기초가 된다. 반면 여성은 돌봄노동의 형태로 기여하므로 돌봄불이익은 노동의 주된 수행자인 엄마가 떠안게 된다(Folbre, 1994). 공공재는 일반 경쟁 시장의 원리로는 필요한 양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출산율 저하는 부분적으로 돌봄노동의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에서 비롯되었다. 부모의 돌봄노동 책임과 노력에서 오는 혜택을 제대로 측정하고 보상할 수 없는 돌봄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돌봄 불이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여성이 돌봄 대신 유급 노동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여성과 돌봄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였지만 이러한 관계는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4. 맺으며

기본소득 제도는 불안정 노동의 확대 속에서 빈곤 감소와 보편적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만으로도 노동시장에서 다수의 여성이 불안정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가 유급/무급 노동의 이원론적 구분을 지양하고 두 형태의 노동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대안적 노동 패러다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돌봄 불이익에 대한 천착을 통해 성별분업 완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지 않고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존재로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봄을 필요로 한다. 복지국가는 돌봄 욕구와 제공받을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남녀 모두가 공유해야 할 권리이자 책임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돌봄 노동은 그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추고 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한다. 이러한 돌봄 노동을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www.kci.go.kr

그리고 오늘날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설명한다.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과 기대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자격과 조건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남성도 돌봄 노동의 책임을 떠맡았을 때 여성과 똑같이 경제적 불이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빤 빠레이스가 기본소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유급노동과 돌봄노동 시간의 기계적 동일성을 목표로 하지 않은 것은,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한 돌봄불이익이 유급노동과 돌봄노동 간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던 듯하다. 본 논문은 돌봄불이익을 야기하는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본소득 지지론자들이 기본소득 도입과 돌봄노동 선택을 통한 실질적 자유의 실현을 낙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돌봄노동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때 돌봄노동을 시장에서 조직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만으로는 돌봄불이익의 완벽한 철폐가 어렵다. 따라서 돌봄을 남녀가 함께 수행하여 돌봄불이익을 나눌 수 있는 정책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돌봄불이익은 돌봄의 관계적 특성과 돌봄계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다양한 차원에서 존재하며 성별 권력 관계에서 약자인 여성이 일방적으로 감내해왔다. 돌봄 불이익에 대해 여성주의는 돌봄의 사회화로 대응해왔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돌봄의 사회화는 곧 돌봄노동의 시장화와 여성화로 귀결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돌봄을 개별 개인과 가정의 사적인 조직과 선택에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보장과 확대는 기본소득 제도가 성별분업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며,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 제도는 양립 가능하다(김교성 외, 2017). 본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돌봄노동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초래되는 돌봄불이익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모든 시민이 돌봄의 책임을 지고 돌봄불이익을 나누는 것이 실현가능한 대안적 전략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 돌봄노동 수행이 실질적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돌봄불이익을 남녀가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표준적 근로시간의 획기적 단축이 필요하다. 여성주의는 남녀가 시장노동과 돌봄노동을 공유하는 젠더 체제를 지향한다. 프레이저(Fraser, 1997)의 보편적 돌봄수행자 모형(universal caregiver model)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근로시간 체제가 필요하다. 현재의 근로시간 체제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지배적인 시기에 규범으로 구축된 이후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주당 근로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제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주당 40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의 표준을 설정하는 법적 규제는 포디즘적 생산관계가 지배적인 시대에 남성생계부양자에게 제공하던 가족 임금 제도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규제는 근로자의 건강 및 산업 안전을 위해서만 충분한 '여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용하지만, 임금 노동을 제외한 다른 노동, 즉 돌봄 노동 시간의 필요성은 수용하지 않았다. 즉 남성

www.kci.go.kr

생계부양자와 돌봄노동을 수행하며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는 아내로 구성된 가구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근간으로 한 이러한 근로시간 체제에 여성을 끼워 넣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남녀 모두로부터 노동 밖의 여유로운 삶을 박탈한 것은 불가피한 결과이다.

Weeks(2011)는 프레이저의 보편적 돌봄수행자 모형을 이어받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여성주의가 성평등을 위해 추구한 첫 번째 전략은 노동이 신비스럽고 도덕적인 것이라는, 자본의 확장에 봉사하는 노동윤리를 재생산하며 여성이 임금노동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전략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가사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여 젠더 간에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두 전략 모두 임금 노동에 대한 지배 담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돌봄노동의 폄훼와 주변화에 맞서기 위해서 시장 노동 바깥에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단순히 여성이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혹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일할 수도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표준 근로시간의 제도적 단축을 요구한다. 이러한 전략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현실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모두는 많은 업무량과 장시간 근로로 인해 육아와 가사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선민, 2016).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근로자가 시장소득을 통해서만 생계를 위한 소득을 보충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연장 근로를 안하거나 시간제 근로를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시장노동과 커리어 편향이 이미 지배적인 사회운영의 규범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보다 소득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선호가 이미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표준 근로시간의 획기적 단축이 동반되어야 기본소득은 돌봄노동 수행의 조건을 마련하고 보편적 돌봄수행자 모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성이 돌봄을 실질적 자유의 확대를 위한 선택지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돌봄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남성이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남성의 돌봄 노동 수행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남성이 돌봄을 수행하도록 가정 내 돌봄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관대하게 제공한다. 남성에게만 관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여성에 대한 역차별로 간주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유급 노동 영역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에 상응하는 돌봄 노동에 남성을 참여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남성들이 증가할수록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기존의 통념은 깨질 것이다. 남성들은 돌봄 실천을 통해 돌봄 책임을 키우면서 돌봄이 여성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인

www.kci.go.kr

식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 책임에 저항하고 회피하는 남성들도 있다(김양지영, 2016). 남성이 돌봄을 선택할 자유는 물적 조건인 경제적 여력과는 무관하게 개인을 넘어선 가족과 사회 전반에 걸친 규범 차원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계획할 경우 부모님과 동료의 반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장애 요인이다. 남성 근로자의 부모들은 육아휴직이 남성 근로자의 경력에 육아휴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과 자녀양육은 여성이 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고집한다(윤자영 외, 2017). 관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중요하지만 남성의 돌봄에 대한 광범위한 차원의 인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남성들에게 돌봄이 실질적 자유를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셋째, 시장에서 조직되는 돌봄 노동은 임금과 근로조건 제고로 돌봄불이익을 완화하면 남성의 돌봄 일자리 진출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재정이 지원되는 사회서비스 형태로 돌봄노동이 조직되어 있을 경우, 돌봄 노동의 임금 향상은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단행될 수 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제조업 생산직과 일부 사무직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순환에 덜 민감하고 재정 지원으로 수요가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남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와 돌봄의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주된 돌봄 수행자로 묶어두려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기제와 규범은 강고하다. 개인의 '선택'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행위에 대해 좋고 싫음을 바꿀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은 사회의 가치와 규범 체계의 제한을 받는다. 인간은 상호의존적인 존재로서 돌봄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선호가 형성되어야, 남성과 여성 모두 돌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은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 참고문헌

강남훈(2013a).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마르크스주의연구. *8(3).* 76-98.

_____(2013b).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연구. *10(2).* 12-42.

권정임(2013). 기본소득과 젠더 정의: 젠더 정의를 위한 사회재생산모형. 마르크스주의 연구. *10(4).* 105-141.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2018). 기본소득이 온다-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양지영(2016). 남성의 돌봄 실천과 성별분업 해체 가능성. 여성학논집. *33(1).* 35-67.

엄성수(역)(2016). 노동 없는 미래. Dunlop, T. Why the Future Is Workless. (2016). 서울: 비즈니스맵

이종숙, 이택면(2011). 경력단절의 임금손실 추정.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이은실(2013). 성체제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연구. *10(2).* 43-65.

_____(2014).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의 지평확장을 위하여-고용, 노동 중심 논의에서 성적 주체성 실현 문제를 포함한 논의로. 페미니즘 연구. *14(1).* 3-34.

오준호(2017).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개마고원.

윤자영(2012). 사회재생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여성주의 정치경제학 이론적 검토. 마르크스주의연구. *9(3).* 184-211.

_____(2016). 돌봄노동과 기본소득 모형. 여성학논집. *33(2).* 3-29.

윤자영, 홍민기, 김근주(2017).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이선민(2016). 동등한 참여와 책임. '돌봄'과 '젠더' 다시보기. KWDI Brief. *40.* 1-8.

이한주, 이재명(역)(2016).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Raventos, D. *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 (2007). 서울: 책담.

이현주(역)(2016). 그림자노동의 역습. Lambert, C. *Shadow work : the unpaid, unseen jobs that fill your day.* (2015). 서울: 민음사.

제현주(역)(2016).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반노동의 정치, 그리고 탈노동의 상상. Weeks, K. *The problem with work.* Duke University Press. (2011). 파주: 동녘.

Anttonen, A. (2005). Empowering social policy: the role of the social care services in modern welfare states. In Kangas, O. & Palme, J. (eds.). *Social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ordic countries.* Houndmills: Palgrave.

Becker, G. (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299).* 493-517.

Baker, J. (2008). All things considered, should feminists embrace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3(3).*

www.kci.go.kr

Bergmann, B.(2004). A Swedish-style welfare state or basic income: which should have priority?. Politics and Society. *32(1).* 107-118.

Bergmann, B.(2008). Long leaves, child well-being, and gender equality. Politics and Society. *36(3).* 350-359.

Bonke, J., Datta Gupta, N. & Smith, N. (2005). The timing and flexibility of housework and men and women's wages," in Hammermesh, D. & Pfan, G. (eds.). *The Economics of time use.* North Amsterdam: Elsevier Press.

Dankmeyer, B. (1996). Long run opportunity cost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education of the mother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9.* 349-61.

England, P. & Folbre, N. (2003). Contracting for care. In Ferber, M. & Nelson, J. (eds.). *Feminist economics today: beyond economic ma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lbre, N. (1994). Children as public goods.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86-90.

_____ (2001). *The Invisible heart : economics and family values*. New York: New Press.

_____ (2008a). *Valuing children: rethinking the economics of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2008b). Reforming Care. Politics and Society. *36.* 373-387.

Folbre, N. & Nelson, J. (2000). For love or money- or bo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4).* 123-140.

Folbre, N. & Yoon, J. (2008). Economic development and time devoted to direct unpaid care activities: an analysis of the harmonized european time use survey(hetus), Background paper for the flagship report on poverty and policy regimes. UNRISD.

Fraser, N.(1997). *Justice interruptu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ostsocialist" condition*. New York: Routledge.

Gardiner, J. (1997). *Gender, care and economics*. Macmillan.

Gornick, J. & Meyers, M.(2003).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New York: The Russell Sage Foundation.

Handler, J. & Babcock, A.(2006). The failure of workfare: another reason for a basic income guarantee. Basic Income Studies. *1(1).*

Hersch, J. & Stratton, L.(1997). Housework, fixed effects, and wages of married worker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2(2).* 285-307.

Heyes, A.(2005). The economics of vocation or 'why is a badly paid nurse a good nurse?'.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4(3).* 561-569.

Molyneaux, M.(1979). Beyond the domestic labour debates. New Left Review. *116.* 3-27

Peng, I.(2010). The expansion of social care and reform: implications for care workers in the republic

www.kci.go.kr

of Korea.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9(4)*. 461-76.

Pollak, R.(2005). Bargaining power in marriage: earnings, wage rates and household production. NBER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Van Parijis, P. (1995).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Van Parijs, P. & Vanderborght, Y. (2017). *Basic Income*. Harvard University Press.

Waldfogel, J. (1997). The effect of children on women's wag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209-17.

_____ (1998). Understanding the "family gap" in pay for women with childre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1)*. 137-56.

Zelleke, A. (2008). Institutionalizing the universal caretaker through a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3(3)*. 1-9.

www.kci.go.kr

Abstract

Care Penalty and Basic Income

Jayoung Yoon*

The economic penalty of care and gender inequality reinforce each other. Unequal distribution and treatment of care are at the basis of gender inequality. Care creates economic penalty that deepen gender inequality. Those who perform care work tend to take the position of the vulnerable in socio-economic power relations. Due to their weak position, it is difficult for them to voice out a fair treatment and reward for their work. As a result, care workers both at home and in the public sector suffering from lower economic value of care are positioned in unequal gender relations with more vulnerable socioeconomic status. The basic income system may have the potential to mitigate multifaceted gender inequalities in our society. For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to help realize the real freedom for wome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unique natures of care work and tackle economic penalties of care work.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 penalties and basic income, focusing on the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system. We argue that if the economic penalties caused by unique natures of care work are not eased or resolved,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may not contributes to alleviating gender inequalities.

Key Words: basic income, care work, gender division of labor, care penalty, gender inequality

◈ 2018. 4. 30. 접수 / 2018. 6. 26. 1차수정 / 2018. 6. 27. 게재확정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email address: jayoungy@cnu.ac.kr)

www.kci.go.kr